대통령령 제 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3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한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정보를 이용할 목적을 말한다.
 -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가 하는 보험업
 - 2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가 하는 우체 국보험사업
 -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공제사업
 - 가. 공제조합
 - 나. 공제회
 - 다.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·직종에 종 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,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
 - 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

19조의15제3호에 따른 여신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

- 5.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- 제21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3.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
-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27조제9항"을 "법 제27조제10 항"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) 법 제27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,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 공·이용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2.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
 - 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 - 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 - 7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·증

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

- 9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10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3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 회
- 14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- 15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1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- 17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
- 별표 3에 제3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내용의 심사
 - 9의2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

별표 4 제2호커목부터 후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	커.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 법 제52조	
	9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 제1항제4호의	4,000
	회사. 다만,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2	

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	
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	
터.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	
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. 법 제52조	
다만,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5호의 2,40	00
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2	
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	

부 칙

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3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제13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 사
- 2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공제조합 나. 공제회
- 다.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·직 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 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, 복리증진 등을 목적의 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

한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 한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 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 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질 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계 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약·공제계약 및 보험금<u>·공제금</u> 로서 그 정보를 이용할 목적을 말한다.

-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 사가 하는 보험업
- 2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 률 | 에 따른 체신관서가 하는 보험업무
-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 는 공제사업

가. 공제조합

나. 공제회

다.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·직 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 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,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

는 법인 또는 단체

- 용) ① (생략)
 -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"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.
 - 1. ~ 22. (생 략) <신 설>

③ ~ ① (생 략)

- 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 는 법인 또는 단체
- 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15제3호에 따른 여 신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
- 5.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 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- 제21조(신용정보의 집중관리・활 제21조(신용정보의 집중관리・활 용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22. (현행과 같음)
- 23.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| 제29조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 사
- ③ ~ ①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 지요건 및 등록절차) ① 법 제27 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 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삭제
- 3. (생략)
- ② (생략)

<u><신 설></u>

제24조(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	
요건 및 등록절차) ①	-
<u>제10항</u>	-
	-
	_

- 1. (현행과 같음)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무허가 채권추심업자 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) 법 제27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, 대부 업자 등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- 2.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
- 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 른 한국수출입은행
- 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<u>농</u>협은행

- 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- 7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 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 융회사
- 9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 행중앙회
- 10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에 따

 른 조합 및 중앙회
- 1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 합 및 중앙회
- 13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 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 동조합중앙회
- 14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

 금고 및 중앙회
- 15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회사
- 1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
 17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

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

 률」에 따른 대부업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신용정보팀				